

제410회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3년11월16일(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75)
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304)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57)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4)
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2)
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2)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6)
8.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59)
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6)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2)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83)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8)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7)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4)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345)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080)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079)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81)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9)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6)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068)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67)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6)
2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52)
2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85)
2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73)
2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0)
2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6)
2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5)
3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7)
3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8)
3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20)

3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21)
3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6)
3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67)
3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1)
3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8)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2)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8)
40.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80)
4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36)
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35)
43.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41)

상정된 안건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75) 2
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304) 10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4) 12
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2) 12
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2) 12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6) 20
8.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59) 22
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6) 24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75) 33
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304) 38

(10시26분 개의)

○소위원장 유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발언 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는 발언 전에 소속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75)

○소위원장 유동수 의사일정 제1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주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제재정위원회 심사자료 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 이는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이 지난 9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방위에서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한 정부지급금추계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법 제9조의2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현재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그리고 공공기

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채무와는 별개로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재정 통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중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함은 정부가 향후 1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 주무 부처별, 대상시설별로 작성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된다면 이를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음 3쪽, 정부 의견은 일단 동의인데요 기획재정부 의견은 잠시 후에 자세히 들으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은, 해당 법안이 과방위에서 의결되었으므로 제도 활성화 측면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다음은 김병환 기재부제1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 법안은 과방위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이 되면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관계로 양쪽 법의, 국가재정법과의 정합성 차원에서 이 입법 개정에 저희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과방위 통과를 전제로 하는 거였잖아요. 이 내용은 들어 보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 기재부가 어떻든 국회에 일정 부분 보고하는 이런 내용의 절차를 가졌던 건데요.

그동안은 없어도 됐고,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지나갔던 거고, 그런데 이제 과방위에서 보강이 돼서 우리가 이 내용을 넣는 것이라……

사실은 과방위에서도 크게 쟁점이 안 됐던 내용인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정부지급금추계서라는 걸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개정된 게, 소

프트웨어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민간투자방식, BTL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번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새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BTL 사업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게 재정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다른 BTL 사업과 동일하게 민자사업법의 정부지급금추계서를 내도록 근거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국회에도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제도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입법입니다.

○박대출 위원 그 내용의 취지를 조금 더 설명을 다시 자세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서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으로 매년 처리를 해 와서 이 법이 없어도 현실적인 지원을 해 오지 않았느냐 그런 질의를 하신 거 같아요, 제가 이해를 하면.

그런데 이 법을 도입하자는 취지는 매년 예산상 처리를 1년짜리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1년, 1년씩 때워 온 그런 현실인데 이걸 근거를 마련해 놓음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예측가능한 제도를 만든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예산을 논의할 때 그다음 해의 예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멀리 내다보고, 몇 년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중기적인 또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법이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정부가 도입을 할 때, 구매를 할 때는 사실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당해 연도로 그냥 삽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달을 하고 이용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민간에서 봤을 때 이런 제안,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걸 스스로가 만들고 그걸 정부가 사는데 사는 방식이 그냥 한 번에 조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료를 두고두고 주는 방식으로 하는 걸 새로운 제도로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냥 한 번에 사는 예산을 심의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사용료를 장기간 줘야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게 당해 연도 재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아니라 상당히 긴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 부담이 어떨 거냐 하는 걸 추계해서 제출해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영교 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예산으로 마련해서 그냥 살 때는 예산이 보통 얼마 정도 들었나요? 여기 보면 임대료만 한 해에 4조~5조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되게 큰 사업인데 그게 맞는 건지…… 제가 본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어서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그건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그건 아닙니까?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예.

○서영교 위원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매년 임대 형식으로 지불하는데 한 해 4조~5조가량 발생할 것으로 추정해 정부 부채가 예상되므로 국회 제출 서류에 추가하자는 이런 의미라고 해서, 부채로 되기 때문에 추가해서 허락을 받자는 거라서 기재부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그냥 예산으로 할 때는 거대했을 거고 임대료만 4조~5조면 되게 큰 사업인데, 그래서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임대료로 하는 소프트웨어 진흥이 예를 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이해도가 빠를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자세한 건 실무자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4조 원은 아마도 지금 하고 있는 민간투자, BTL 방식의 전체 SOC는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아마 그 정도 될 거고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실제 하더라도 규모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요. 구체적으로……

○서영교 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가 잘못됐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아마도 다른 민간투자 사업을 인용하면서 그 정도 규모가 되지 않았나, 그러지 않고 소프트웨어면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우리가 이 제도가 도입될 때

소프트웨어를 어떤 것을 할 건지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SOC 같은 경우에는 BTL 사업이 국회와의 관계에서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었습니다. 총사업비를 미리 승인받고 사업별 한도도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공고를 해서 연차별 정부 부담액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는 관계가 명확하게 돼서 SOC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국회와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제안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의 관계가 불명확하다 해서 저희가 중단을 시킨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국가재정법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그리고 국회법이 같이 개정안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BTL 사업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요. 이번에 민간에서 다양한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이제 주워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한 적은 없지만 이제 들어오게 되고 향후에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국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가지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군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예.

○서영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과방위에서 그렇게 4조~5조로 추정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저희가 보고받았는데, 4조나 5조를 임대료로……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아마 전체 투자하고 개발하는 데 든 비용을 추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니까 한 번 더 보시고 그 내용을, ‘그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걸 알려 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여기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제40조의3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이 내용 지금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추계서를 말씀하

시는 건가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소프트웨어 진흥법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주영 위원 예, 소프트웨어 40조의3.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소위 자료 7쪽에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예, 지금은 추계할 수 없습니다.

○김주영 위원 이게 포함돼서 법 개정됨으로써 정부 재정에 크게 부담이 된다거나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 취지가 그런 부분들을 국회에 다 보고드리고 통제를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양기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기대 위원 그동안에는 연간으로 그냥 사 가지고, 정부 예산으로 했는데 이것을 임대료 명목으로 해서 매년, 수년 쪽 돈을,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데 그러면 연간으로도 하면서 또 중장기적으로 임대료 명목으로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기존에 했던 방식과 병행해서 하는 거냐고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예, 병행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BTL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민간의 자본도 이용하겠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해서 민간이 먼저 창의적으로 정부 서비스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그것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서 진행을 해 보겠다는 차원도 있는 겁니다.

○양기대 위원 그런데 왜 제목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했지요? 정부가 임대한다는 건가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예, BTL로 하는 겁니다.

○양기대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업들의 수요가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있고 앞으로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지금 민자 적격성 심사……

○소위원장 유동수 소속을 얘기를 해 주고 하세요. 소속, 이름을, 성명을 밝히고……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민간업체에서 어린이 급식 통합관리 시스템 제안한 게 있고요. 또 지능형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 플랫폼 제안을 한 게 있고요. 그래서 그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고요.

○양기대 위원 적격성 심사는 누가 해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과기부에서……

○양기대 위원 그래서 그 심사를 해서?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그 심사에서 타당하다라고 하면 한도 부여받은 범위 내에서 계약을 맺게 되고요. 그에 따른 연부액이 쏙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국회에 다시 제출하게 되는 거고요. 제출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예산안으로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양기대 위원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그냥 그렇게 제안해서 ‘좋다’ 하면 그냥 사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제안들이 있을 때.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BTL 방식이 아니라 그냥 구매 방식이었습니다.

○양기대 위원 과거에는 구매 방식으로 했는데 그것을 BTL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는 임대 형식으로 매년 할 수밖에 없으니 그런 추계 계획을 세우겠다 그 말이지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예.

○양기대 위원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이런 형식으로, BTL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까?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서비스에 대한 창의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겠다는 측면도 강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런 창의성 있는 여러 사업들……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제안이 들어올 거고……

○양기대 위원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아까 중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하는 구매형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지하면서 임대형 방식을 새로 옵션으로 도입하는 그런 취지가 있으니까요, 케이스에 따라서는 그냥 구매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할 거고요.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조금 창의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와서 개발을 하는데 구매하기에는 한꺼번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민자를 같이 투자를 해 줘야지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BTL 방식으로 해서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정부가 조달하겠다, 지원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민간 협력 내지 공조 시스템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의 예시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네. 지금 차관 말씀하신 대로 식약처의 어린이집 급식관리 시스템, 법원의 등기 발급 시스템, 대검찰청의 가상화폐 추적 시스템 이런 것은 민간의 어떤 제안이 없다면 해당 부처에서 만들어 내고 이게 과연 실현가능한 기술인지, 이렇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아이템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고,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막연하게 업체에서 이런 걸 기술 개발해 가지고 정부에, 부처에 제안해서 ‘우리 기술 개발했으니까 이것 사라’, 아무 뜬금없는 기술 개발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걸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과기정통부에서 의결된 법이,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랑 같이 톱니바퀴처럼 물려 가지고 연계돼서 진행하는 법이 있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법이 기재위에서 돼 가지고 두 가지 법안이 함께 올라갈 때 이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맞습니다.

○양기대 위원 하나만 더……

○소위원장 유동수 양기대 위원님.

○양기대 위원 심의관님한테 여쭙볼게요.

각 부처별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심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과기부에서 합니다.

○양기대 위원 아니, 과기부에서 하는데 그 과

기부의 누가 하나……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민간까지 포함한 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를 합니다.

○박대출 위원 민간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런 건.

○양기대 위원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 누가 심의를 하는 건지.

만약에, 아까 이런 제안들이 왔잖아요, 급식이거나 이런 게 왔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심의를 하는지.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과기부에서 민간 전문위원까지 포함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양기대 위원 구성돼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구성을 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지금 구성돼서 심의 중인 것도 있습니다.

○양기대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언뜻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임대 방식이 좋냐 그냥 바로 구매하는 게 좋냐에 대한 논란일 수 있는데 심의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임대 방식이 자칫하다가 예산 낭비만 초래할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5년 임대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중간에 뭐가 잘못됐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들을 다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게 다 되어 있습니까?

실무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하는 거라서요, 처음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대안들을 갖고…… 문제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그건 제안된 민간업체하고 정부 부처와의 계약의 문제 그리고 당초 제안했던 과업 수행이 기대했던 만큼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떤 식의 계약을 하고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해서 디폴트를 낼 것인가 그것에 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양기대 위원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지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그건 어떤 식의 계약을 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걸 제도적으로 미리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기대 위원 모르겠어요. 이 법이 통과돼서 시행령을 만들 때 한다면지 했겠지만 그런 게 없

으면 그런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자칫 잘못하면 그냥 예산만 더 낭비할 수 있다, 그 점은 반드시 좀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주영 위원 그러면 아까 사례를 서비스 쪽이나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런 것 말씀하셨는데 지금 로톡이라든지 직방, 다방, 삼짍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간에서 엄청나게 수익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사 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게 좀 범위가 명확지가 않아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게 결국은 정부에 필요한 서비스거든요. 아까 말한 급식이라든지 공공 부문에서 필요한 부분을 소프트웨어가 이미 다 개발된 상태로 구매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감안해서 임대형 방식으로 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회사들의 서비스 부분을……

○김주영 위원 그건 예를 들은 건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런 것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명확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정부가 과제를 내주고 과제를 내준 것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그것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데 쓴다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데가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부분은 일단 대상은 아닙니다.

○김주영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과제를 내주고 정부 소유로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에 정말 좋은 아이템들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조금 명확지가 않거든요. 요즘 이게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런데 지금 SOC

의 BTL 사업 대상을 한번 보시면 어차피 정부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도로를 놓거나 어디 하는 것이 다 정부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정부가 재정으로 다 부담하는 것이, 단기간 내에 그걸 짓지를 못하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해서 짓고 정부가 사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정부가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정부가 필요로 하고 공공 부문에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처럼 다 개발된 것을 구매 방식으로, 하나의 방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민간이 먼저 투자를 하고 정부가 사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해서 재정의 당장의 부담을 줄이면서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목적 자체가 민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류성걸 위원님.

○류성걸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경제가 확실히 한 단계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적인 사항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사항까지 국가재정법에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이라서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반영을 하는 것에 저는 찬성합니다.

다만 만약에 앞으로 이런 법들이 계속 나온다면 계속 이런 형태의 절차가 반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기반시설이란’ 이렇게 해 갖고 사회기반시설의 정의가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이 부분이 물질적인 재화와, 아까 여러 위원님들 또 답변하는 정부 측에서도 용어가 나왔습니다만 서비스에 관련되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사회기반시설란’ 해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단순히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서비스라고 이렇게 넣어서 하면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개별 소프트웨어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른 서비스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법이 났을 때 BTL,

물론 BTL이 아니고 BTO도 있고 BOO도 있고 BOT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BTL은 결국 국가가 채무를 지기 때문에 추계서를 내라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맞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BTL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 지금 민간투자법에 들어가는 것은 BTL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듯이 BTO, BOO, BOT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반영을 하도록 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소위원장 유동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존경하는 박대출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법안을 내주셨는데요. 저도 류성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사회기반시설 아니면 사회적 인프라 이런 부분에 BTL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특성상 감가상각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 보면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조금 의심이 갑니다.

회계적으로도 두 가지 상각을, 용어를 달리 씁니다. 디프리시에이션(depreciation)하고 애머티제이션(amortization)하고 각각 달리 씁니다. 그렇게 달리 쓰는 이유는 이렇게 상각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애머티제이션으로 쓰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10회계연도 이상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면 국가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보안이나 비밀유지 이런 측면에서 봐서도 이것은 국가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더 듭니다.

특히 아까 설명한 것처럼 공공에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이것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그것을 직접 외부에서 빌드(build)하고, 외부에서 빌드해서 트랜스퍼(transfer) 받고

우리가 리스(lease)해 주고 이런 형식이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직접 해야 할 부분이, 속성이 강하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마지막은 뭐냐 하면, 보통의 경우에 보면 BTL 사업들이 국가가 직접 예산으로 하는 경우보다 예산 낭비가 심합니다. 직접 필요치 않아도 리스기 때문에 먼저 건설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감가상각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SOC보다는 굉장히 짧을 거고요.

○소위원장 유동수 그러니까 이게 10개년도 이상이거든, 추계서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런데 여기서 조문을, 제가 이쪽 법이 논의 과정에서 정확히 어떻게 된 것까지는 제가 폴로 업 못 했습니다만 조문을 보면……

○소위원장 유동수 아니,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러니까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를 하면서 정부가 10년 임대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유동수 10년의 임대료를 준다면 이 소프트웨어 사용을, 10년간 쓴다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장기간에 쓴다는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소위원장 유동수 그러니까 그게 중간에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민간의 기술이 그 사이에 그대로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폴로 업이 되면서. 이게 비밀 보장이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걱정이 많은 거예요, 특히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10개년도,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제품들을 계속해서 사용한다, 이게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로 보면 그사이에 변화할 확률이 훨씬 크다는 거지요.

도로나 항만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설치되면 30년, 50년 이렇게 쭉 변치 않고 쓸 수 있는데, 중간에 보수하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근본적으로 발달 단계에서 전혀 다른, 기술의 발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것은 한번 쟁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정부가 했던 소프트웨어 사업이……

○소위원장 유동수 그리고 그 정도로 중요하다면, 10년 이상 쓸 것 같으면 국가가 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박대출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 좀 드릴게요.

○소위원장 유동수 예.

○박대출 위원 위원장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보는데, 그런 지적이 충분히 우리가 지금 짚어 봐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기본으로 들어갈 거예요.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개념에 기술을 진화시키고 또 계속 개발하는 그 개념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걸 당연한 거야,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이게 무슨 자동차처럼 하나 납품하고 그냥 그걸로 통 하고 AS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그게 계속 진화된 상태로 개발이 들어가야 하는 비용까지도 아마 감안이 될 거예요, 예산할 때.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감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제가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혹시 과기부 쪽에서 국가시스템 운영하는 데 이런 소프트웨어가, ‘저희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사회적으로 요구가 있고 우리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면 위원님들이 금방 와닿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가 예산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매입해서 하는 방식보다 BTL로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의 설명을 들어서는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기부 쪽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런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쉽게 ‘이런 필요성 때문에 BTL 사업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지금 현재 과기부에서 미처 배석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오후나 아니면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소위원장 유동수 오늘 오후라도 준비되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준비되는 대로 말

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기본적으로 1800년대에 산업혁명이 있어서 몇 가지 구조가 있는데, AI하고 데이터가 되면서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도 점점 선진국형으로 가기 때문에 인건비도 높아지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 제조업이 점점 위기로 가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의 소프트웨어에서 어느 만큼 뻗쳐 나가느냐가 결국 대안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첫째, 그런 것이 촉발되기 때문에 민간투자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가 계속 기술 발전을 하는데 그 기술의 대부분은 미국이 주도하는데 앞으로는 중국이 주도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그것을 계속 따라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에는 공무원을 통해 가지고, 어딘가 자본이 나가는데 오히려 민간으로 하는 게 맞고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시기라는 게 장기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간을 대비하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고……

최신의 첨단산업을 빨아들이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과기정통위원회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대기업이 받아 가는 거예요. 최첨단이니까 최첨단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대기업 소프트웨어가 가는데,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가는 이런 소프트웨어 산업들이…… 지금 노란봉투법도, 하청 하청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라는 게 모든 기업들이 기술적으로나 마케팅적으로 세계시장에 인발브(involve) 될 수 없으니까 첨단기업을 통해서 하청 하청 기업들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일자리가 그만큼 더 창출이 돼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벤처기업이나 신기술을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얼마나 만들어 내느냐, 그런 시장 조성적 기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정치권이나 국회가 관심을 갖고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법 자체는 그 본질적인 토론이 과기부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계산서, 결국에는 그러면 그 돈 나가는 데 국가 예산에서 그것을 추계해서 국회가 들여다 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반대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고 우리도……

○소위원장 유동수 박대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대출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43항까지 법안을 심사해야 되는데 지금 1항에서 40분……

그래서 속도를 내 주시면 좋겠고요.

○소위원장 유동수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우리가 지금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는 예산 측면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니까 근거를 마련하는 데서 큰 이의가 없다면 이 법안은 처리하시고 또 본질적인 이 문제를 운영하는 소관 상임위는 기본적으로 과기정통위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속도를 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닌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유동수 이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오후에 과기부 쪽 설명 한번 듣고 그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보다 깊은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124304)

(11시04분)

○소위원장 유동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9쪽입니다.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안입니다.

결산보고서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를 신설하는 내용이 추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드린 바와 같고,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부터 하고 현금흐름표 작성은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를 신설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발생주의 회계 제도에 대한 보완적인 수단으로 보입니다. 발생주의가 현재 실제

현금의 유출입과는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간에 재무적 효과를 기록하는 것으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금의 원천과 재원의 사용에 대해서 한눈에 보여 줄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12월 국가결산보고서의 이해도 향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재무제표 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결산보고서의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때 현금흐름표 도입 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현재 민간 기업 부분을 보면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 현금흐름표를 포함하는 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한 해외 국가—호주,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등—을 보면 대부분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건 정부안으로 제출한 법안입니다.

그동안 전문가들과 같이 해서 한 몇 달 운영을 해 가지고 작년 말에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을 마련했고 그 내용 중의 하나가 현금흐름표를 추가하자, 그래서 국민들께 국가재정과 관련한 정보를 조금 더 투명하게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고 그것을 이번 입법에 담아서 온 겁니다.

정부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류성걸 위원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제가 하나만 여쭙볼게요.

이 부칙에 보면 ‘현금흐름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해서 ‘개정규정은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내년 결산부터 적용은 안 되나요? 1년 당길 수는 없나요? 이렇게 길게 잡은 이유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아마 이게 저희들 디브레인 있는데 그것도 고쳐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장 내년 회계연도부터 해 가지고 결산서에 제출하기는 시간이 조금 부족

한……

○소위원장 유동수 이 결산을 보면 거의 2년 미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3년이잖아요. 내년 결산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후년 결산은 실제로 하게 되면 2026년도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어지니까……

개발이 그 정도 오래 걸리나요, 그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준비 기간이 기술적으로 좀 필요해서 25회계연도 시의 결산부터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4년 결산부터 하게 되면 어쨌든 내년에, 결산은 25년에 이루어집니다만 내년부터 이게 교육도 돼야 되고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정도 유예기간은 필요하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것까지 충분히 검토했다 그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 법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게 되면 실질적인 시행은 2026년이 되는 겁니까?

○소위원장 유동수 그렇지요. 2026년도에 신고하게 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러니까 첫 결산 보고서가 나오는 건 26년도에 나오구요. 그 대상은 25회계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성을 하게 되는 건, 25년부터는 입력을 하거나 할 때 작성은 이루어지는 거고요.

○박대출 위원 그런 준비 기간이 필요하겠단, 1년 정도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소위원장 유동수 국가 결산이 보통 3월까지입니까? 결산 마감이 3월 말까지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3월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러면 2026년도 3월 말까지 신고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래서 제가 많이 늦는 것 아닌가, 그래서 1년 정도 당길 수 있나 이렇게 여쭙보는 겁니다.

좀 불가능하다 이거지요?

○박대출 위원 기술적으로 어렵겠네요.

○류성길 위원 저도……

○소위원장 유동수 류성길 위원님.

○류성길 위원 아니, 그런데 현금흐름표 만드는 데 뭐가 시간이 그리 오래 걸려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뭐 이리 오래 걸려요?

○소위원장 유동수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류성길 위원 여기 유동수 위원님도 그러시고, 회계 관련된 사항들을 전부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디브레인 뭐 고치는데 그렇게 많이 걸려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김현곤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디브레인 시스템 개편을 내년도에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직원이 그냥 데이터를 수기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현금흐름표는 디브레인 시스템에다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산출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류성길 위원 자, 이렇게 해 주시지요.

그것 여기 앉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관련되는 사항들하고 플로 차트 만들어서 가져오십시오.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따르는 시간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 여당 위원이 더 까다로워.

○류성길 위원 빨리 하자는 이야기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하여튼 저희들 일정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예.

저는 사실은 이 현금흐름표를 국가에 도입한다는 건 국가회계시스템이 굉장히 진일보하고,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재무정보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이 정도 가지고는 국민들한테 알리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이 현금흐름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는 순간에 국가재정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법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당기면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시간이 좀 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4)

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2)

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2)

(11시11분)

○**소위원장 유동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상정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총 3건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3건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유재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특례를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 국유재산특례법 제4조에 따라 별표의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 명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들은 개정안 심사 시 다른 법률의 재개정 여부를 봐야 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대해서 무상양여 특례를 신설하는 법입니다.

기존에는 국유재산 무상 사용까지만 허용했는데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양여까지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개정된 광주과학기술원법 그리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 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 외 양여까지 허용하는 내용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시행일은 2022년 7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특례 신설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신설 요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역경쟁력 향상과 국가 과학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았고,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유사 기술원의 경우 국유재산 양여까지 이미 허용하고 있습

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개정안의 특례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있는데 유사 기술원의 특례 존속기한이 2029년 12월 말인 것을 비교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칙의 시행일은, 현재 이미 시행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지금 조승래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법이 개정이 되었고 그 근거로 양여까지 허용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국유재산특례법에 반영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의견 중에서 특례 존속기한을 다른 기술원의 특례 존속기한까지 비교를 해서 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개정안 자체가 26년 12월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이요, 법안의 시행일이 경과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소위원장 유동수** 위원님들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제가……

○**소위원장 유동수**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광주과학기술원법하고 대구과학기술원법이 어느 위원회에서 통과된 거지요?

○**소위원장 유동수** 과방위.

○**김영선 위원** 과방위에서 뭘 지원하려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국유재산에 관해서, 굳이 국유재산 뭘 양여해야 되는지 그게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는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해야 돼요.

국유재산에 관해서 과학기술원이나 여기에서 필요한데, 지금 과학기술원이나 과학적 R&D나 인건비나 지원이 풍부할 텐데 왜 국유재산을 양여받아야 되는지 그 불가피한 사유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지, 과학기술 지원해 갖고 됐으니까 이것 국유재산을 양여해라?

국유재산 양여는 결국 우리 기재위 관할 아니에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구체적인 양여 사항은 정부가……

○**김영선 위원** 그런데 그게 과학기술원법에서 양여해라 마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입니다.

구체적인 양여 여부는 정부가 따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같은 과학연구기관끼리 서로 다른 내용이 있어서, 해당 기관에서 요구가 있어서 과방위에서……

○**김영선 위원** 아니, 판단하기 전에 입법으로 판단하라고 여기 온 것 아니에요. 행정부가 입법이 허용된 이후에 판단하는 것을, 지금 입법이 필요하냐고 묻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대답이 돼요?

그러니까 입법으로 국유재산을 양여해야 될 필요가 왜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국유재산 양여 부분은 우리 기재위에서 처음부터 검토해야 되는 문제지, 과기위에서 얘기했다고 우리가 이것을 동의해 줘야 되는…… 이것은 아까 1항 문제하고는 얘기가 다른 문제예요.

왜 양여를 해야 돼? 과기부에서는 과학기술 지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국유재산에 관해서는 얘기할 권한이 없지.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과기원에서 뭐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이 있을 거예요, 국유재산. 무슨 국유재산을 왜 양여받고 싶어하는지를 좀 자료를 주세요, 이렇게 내용 없이 얘기할 게 아니고, 과기부나 이것 한 사람들한테 해서. 목적으로 하는 게 있다고요.

과학기술 한다고 아무거나, 국유재산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할 수 있어요? 각 법마다 뭘 타겟으로 하는지, 왜 그게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할지 한도가 있어야지.

자료를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만……

○**박대출 위원** 그것 덤으로, 추가로 같이 종합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법안들이……

○**김영선 위원** 잠깐만,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박대출 위원** 잠깐만 있어 보세요.

○**김영선 위원** 아니, 마지막으로……

이 법이 뭐냐 하면 광주과학기술원이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거라면 기술원하고 행정공무원만 합의하면 국유

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 무한의 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요.

말씀하세요.

○**박대출 위원** 그런 근본적인 문제 플러스, 이게 만약에 시행을 해서 특례가 신설돼 가지고 지원을 할 때 개별 법안들에 따라서 내용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감면이니 면제, 무상 양여, 표현들이 다 달라 가지고…… 뭔가 좀 일관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일관성으로 한 그 기준을, 면제와 감면 기준을 부분적으로 어떻게 기준을 맞출 건지 이런 것이 지금 전혀…… 혼재된 것 같네요, 이게. 그렇지요?

쉽게 말해서 공짜하고 그냥 깎아 주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기간도 지금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소위원장 유동수**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양여 부분에 존속 기한을 정하신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존속 기한을 정하고……

○**이수진 위원** 양여가 된데 존속 기한…… 사용 대차예요,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2021년도에 기재위에서 논의를 할 때 기존에는 기한 설정이 없었습니다. 기한 설정은 그때까지 하라는 게 아니고 그때 가서 이 제도의 존치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자 해서 그 기한을 설정을 한 겁니다.

○**이수진 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아예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기한을 26년 12월 거기까지 정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무상으로 얼마든지 양여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기한 지나면 다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 법 조항의 효력 존속 기한이에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양여해 달라는 요구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양여를 할 경우에도 매년 정부가 국회에 양여계획을 전년도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견제할 수가 있고요.

실사 양여가 필요하다더라도 부처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기재부가 그 재산을 망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충분히 필요성을 검토해서 양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류성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성걸 위원 지금 근본적인 문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여쭙볼게요.

이 부분은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에 관련돼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그렇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 이렇게 근거 조항이 만들어지면 광주과기원이든지 또는 대구과기원이든지 필요할 때 ‘이런이런 국유재산을 양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기재부에서는, 국유재산 관련된 심사위원회가 있지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그렇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심사를 해서 정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맞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면 또 여쭙게요.

UNIST하고 KAIST에서 양여와 관련된 사항을 요구를 하고 또 양여된 자산이 있나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현재 없습니다.

○류성걸 위원 똑같은 취지로 이거는 근거에 관련되는 사항이니까, UNIST나 울산과기원이나 또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이나 여기에 관련돼서 똑같은 취지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같은 취지에서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양기대 위원님.

○양기대 위원 지금 보니까 광주·대구경북과학기술원 특례 존속 기한을 정부 측에서는 2026년 12월 말까지로 하겠다 했는데 지금 과학기술원이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하고 광주·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 4개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까?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현재는 4개입니다.

○양기대 위원 이 4개가 다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차관께서 특례 존속 기한을 그냥 이대로 2026년 12월 말로 두자고 했는데 이렇게

같이 맞춰 주는 게 좀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저희는 소관 상임위에서 2026년을 요구했기 때문에 상임위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이고요.

○양기대 위원 굳이 해 줄 필요가 없다?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으로 4개 기관이 똑같은 시기에 재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실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기대 위원 과방위에서 일단 2026년 말까지 해 달라고 했군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그렇습니다.

○양기대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우리가 지금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예산 심사 때도 심의를 하고 그게 필요하면 정부가 계획을 내세워 갖고 기재위의 동의를 받는데 이거는 과학기술원들하고 행정관료들한테 수용권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국유재산을 준다는 것은 결국 국가재산을 투자하는 건데 국유재산심사위원회가 입법기관입니까, 아니면 행정기관이에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기획재정부 장관 자문기관입니다.

○김영선 위원 행정기관이나, 입법기관이나 문장아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행정기관입니다.

○김영선 위원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국유재산을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게 필요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그걸 해야 되지 이렇게 물꼬를 터 놓으면,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심의할 때 안건 올라올 때 하는데 안건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번에 제주도 군사시설의 일부를 양여받는 것도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 입법 갖고 심도 있게 얘기했는데 왜 과학기술원마다 자기네들 필요할 때는 행정부랑 얘기해 갖고 할 수 있다고, 규정을 만들어 갖고 양여한 거는 또 없다면서요?

나는 이거는 원천적으로 반대입니다. 이거 국회가 심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완전히 빠져

나가는 거예요. 국회의 기본 권능 하나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심도 있게 심사해서, 필요하다면 그때그때마다 왜 필요하고 어떤 목적에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국회 심사를 거친 다음에 국유재산을 투자하는 거는 좋지, 예를 들면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를 한다는 거는 그게 범주가, 시설이 한정돼 있어요. 확산될 우려가 없는 데 양여가 되면 딱 조직화돼 있는 기술원들과 행정관료들하고 어떻게 투자되는지 국회의 통제를 전혀 안 받는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R&D 같은 경우에 몇십억 이런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몇백억이나, 사실은 기본적인 투자 계획을 해서 땅을 확보하거나 뭘 확보해야 될 것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심히 중요한 것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원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미 했기 때문에 해 달라, 그것도 결국에는 발끼워 넣기, 한두 개 끼워 넣었으니까 나머지 기술원들도 다 해 달라, 그러면 지금 수용권을 갖는 것들이, 기술원마다 다 수용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러고저러고 하면 과학자들이 필요하다고 할 게, 필요가 없겠습니까? 다른 것과 균형이라든지 국민의 입장에서 심사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거칠 필요가 있는데 그런 필요 없이 R&D면 국회랑 상관없이 다 잘해도 된다, 행정 차원에서 잘해도 된다, 그건 놔두고…… 이걸 있을 수 없는 법들을 남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제출한 의원님들도 각각 자기 과기위나 이런 데 잘하는 건 좋은지 모르지만 과학기술에 관해서는 국회의 심사권을 포기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국회의 권능을 심히 해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요한 게 다…… 묻지마로 투자되는 게 다 R&D 쪽인데 들여다볼 권능 자체를 차단하는 거는, 이걸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자료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2쪽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유사 기술원의 경우 국유재산 양여까지 허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사 기술원에서 혹시 양여까지 한 케이스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현재까지 그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현재까지는 양여한 적은 없습니까?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자료 요구하셨기 때문에 과거 사례까지 충분히 조사해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자료 한번 주시고요.

○김영선 위원 이 과학기술원들이 뭘 양여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제출하세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저는 이걸 반대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그 범주 내에서 우리가 심사해서 허부를 따져 볼 수 있는데 국회 권능을 기본적으로 침해하는 이런 법이 남발되는 거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이 안건은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방사광가속기 운영·연구기관 등에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특례 신설 이 부분도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6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방사광가속기 운영·연구기관 등에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그리고 장기 사용허가 등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방사광가속기는 방사광 방출을 위하여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 회전하게 하는 가속장치, 방사광을 활용하는 빔라인 장치 및 그 부대시설입니다. 물질의 내부 구조와 성분을 분석할 수 있어 기초과학부터 신소재 개발이나 반도체 개발, 유전공학 등 응용과학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개정안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대형가속기 전반에 적용되는 입법으로 그 해당 상임위에서는 적용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지금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중입자가속기까지 포함하는 대형가속기 전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도 수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특례 신설 요건에 맞춰서 검토를 할 때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가속기

구축을 지원하려는 점에서 특례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속기 운영 기간이 장기, 50년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사용료 감면 그리고 장기사용허가 특례가 예산 등 다른 지원 수단보다 적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례 적용 대상이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존속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존속기간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정부 의견은 생략하고요.

28쪽에 관련 조문으로 지금 현재 과방위에서 통과한 방사광가속기 특별법 제정안(수정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 법도 지금 관련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나가 있는 법에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감면, 장기사용허가 관련 특례가 규정이 돼 있어서 이를 입법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고 그 전체적인 방향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특례 적용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실제 대형가속기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그리고 운영하는 기관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법안에서는 그 가속기를 이용하는 연구개발기관이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까지도 감면 혜택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범위는 운영기관과 구축하는 기관으로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존속 기한의 설정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 존속기한이 이 경우는 저희들이 한 8년을 내부 지침에 따라서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 기한은 2031년 12월 31일로 수정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변재일 의원님이야말로 과학기술계의 진짜 박식하고 전문가인데 방사광가속기 운영에 관해서도 감면, 장기사용허가, 뒤에 조문을

보면 매각까지 돼 있지 이게 양여, 무상 양여 이렇게는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존속기간 설정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감면은 5년, 양여·장기사용허가, 여기에도 양여가 들어가면…… 매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요. 뒤에 조문은 매각이라고 돼 있는데 양여라고 하면 이거는 안 돼요. 임대 내지는 장기허가든지 해서 이거는 8년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그런데 방사광가속기 자체가 과방위에서는 의결이 됐고 법사위에 계류 중이니깐 이거는 허용해도 되는데, 과학계에서 뼈가 굵고 전문가이신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학기술원에다가 무상 양여 넣어 갖고 나중에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정도는 팬찰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류성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성걸 위원 방사광가속기 관련해서, 대형가속기만 해당이 되나요?

제가 이 법 전체를 몰라서 그런데, 관련되는 부처의 분들 오셨나요?

앞으로 우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관련해서는 반드시 관련되는 부처에서 와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십시오. 기획재정부에 계시는 분들은 국유재산 총괄청으로서 역할만 하지 실제로 그 담당 부처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모르잖아요.

방사광가속기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도 이렇게 되고 있는지, 다른 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대형가속기만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영선 위원 가속기는 대부분 대형이잖아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방사선가속기……

○류성걸 위원 여기에 정의가 대형가속기라고 하니깐 결국은 대형도 있을 거고 중형도 있을 거고 그것 말고 다른 가속기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중입자가속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류성걸 위원 다 들어가는 거고, 다른 가속기는 없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현재 저희가 대형으로 그렇게 분류가 돼 있고요. 현재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포항공대,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서울대학교병원 내 군데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원래 법안은 방사광가속기로 나왔습시다만 그게 포괄 범위가 넓어지면서 대형가속기 이렇게 법 제목도 바뀌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대형가속기라고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저도 직접 가 보고 했습니다만 대형가속기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법에 의하면 중형가속기도 있을 수 있고 소형가속기도 있을 수 있는데 대형가속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쭙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관련되는 기관이 와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류성걸 위원님 말씀에 잠깐 추가하면, 다른 상임위에서 본질적인 심사를 해서 우리가 추가로 국유재산을 해야 되는 것은 여기 와서 설명할 게 아니라 사전에 자료를 보내 주세요, 검토할 수 있게.

○**소위원장 유동수**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대출 위원** 국유재산 문제가 나와서 이 문제를 제가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국유재산 소유권 문제와 이용권 문제가 정부 부처 간에 달라져 버리면서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국유재산인데 그것을 기재부가 총체적인 관리를 하면서 또 해당 기관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각자 따로 놀다 보니까 함정이 생겼어요.

지금 이 문제도 여러 가지 조항에서 양여나 감면이나 면제나 대부 또는 매각이나 소관 부처에서 이렇게 다양한 조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인천공항의 골프장 계약을 하는 경우를 보면서 그때 제가 느꼈는데 이게 누구도 바로잡을 기관이 없더라고요. 국유재산인데 기재부는 아니라고 그러고 공항부지를 골프장으로 이용하는 그 계약은 공항공사가 민간업자랑 맺는데, 대단히 부당한 내용으로 맺는 것 같은데 그것을 바로 시정하려면 바로잡을 조치가 없

더라고요. 국유재산인데 기재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그래 버리고 공사는 합법적인 계약, 계약에 하자가 없다고 속된 말로 나자빠져 버리면서 이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국유재산에 관한 근본적인 이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지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내용은 아실 거예요. 아시지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박대출 위원** 땅 하나를 쪼개 가지고 분할을 해서 이용계약을 맺는데 하나는 매출의 몇 % 해 가지고 매출에 부분적으로 하는데 또 한 부분은 매출의 120%인지……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매출의 120%인가 하여튼 100%가 넘어요. 그런 계약을 맺는 경우가 어디에 있냐고. ‘이 땅을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100만 원 벌면 120만 원 낼 테니까 이 땅을 나한테 주시오’라는 계약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냐고. 그런 계약을 맺더라고, 국유재산을.

그런데 이것을 문제가 있다고 잡으려니까 기재부는 국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도 없고, 권한이 있다는 공항공사 측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을 거쳐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그것도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세상 천지에 어떻게 그런 계약을 맺을 수가 있냐고요.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그것 주체가, 민간의 계약이면 또 자기들끼리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국유재산을 가지고 이런 계약이 맺어진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함정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게, 기재부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대형가속기에 대해서 이렇게 특례를 신설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아니면……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이미 구축된 것도 있고요, 앞으로 구축될 건데 대규모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중에 국유지가 들어가게 되면 그건 무상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고, 현재 청주에 설치하는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국유지가 있는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무상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로 애초에 시작되었는데

과방위에서 논의 과정 중에 이렇게 법안 문구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방사광가속기가 어마어마한 땅이 필요한 시설이군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국유재산, 국가 땅이 있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한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이수진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방사광가속기 시설이 얼마나 있어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개수로는 여섯 군데가 있고 운영기관으로는 네 군데가 있고요.

○이수진 위원 그러면 일반 기업들이 와서 여기에서 작업을 하나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운영기관이 있고 운영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실험을 하는 게 출연연구기관이나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소위원장 유동수 예, 말씀하세요.

○김영선 위원 이게 보니까 방사광가속기나 과학원들 재산 이것이 과기위에서 결정하고 따라갈 법이 아니에요.

○소위원장 유동수 국유재산은 우리가 결정해 줘야지.

○김영선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기재위 위원들이 이것을 내 갖고 검토를 해서 그게 되면 방사광가속기나 이런 게 되는 문제지, 이것 쓰는 사람만 과기부라는 거지 이 항목 자체는 우리 기재위에서 원천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거쳐야 되는, 우리 기재위에 제안돼서 입법되는, 거쳐야 되는 법들이고 다 이것을 해야 되고 기재부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절차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유동수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주영 위원 저도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정부에서도 이런 의견을 표명했는데 이게 지금 사용 기간이 50년 이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이런 데 사용 기간 같은 경우를 수명이 다할 때까지라든지 뭔가 이렇게 정해 놓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네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아까 이수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 제도를 계속 존치시킬 건지 재판단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려고 저희가 기간을 설정하는 건 아닙니다. 2021년도에 특례제도가 너무 많이……

○김주영 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지금 계속 여기에 임대해 주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현재로는 그럴 계획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그 기간들을 그러면 5년이나 8년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 갱신해 나가는 건가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그렇습니다.

○김주영 위원 그런 것 사실 불필요하잖아요.

○김영선 위원 아니요. 오시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여러 과기원들이 무상 양여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과기원들이 투자도 많이 받는데 국유지를 원한다든지 하면 그게 대형이 되거든요. 그것 자체를 완전히 무상으로 하고 이것 심사 기간을 안 하면 사실은 국민 세금, 이게 다 국민 세금으로 해서 예산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원천적으로 다 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8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주는 거니까 예산 심사에는 안 들어가지만 국회의 심사권에 있어서 점검을 받아라 그런 취지기 때문에, 물론 한 번 하게 되면 이 기관이 없어질 때까지 하게는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유재산이 공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세금이 들어와서 국민들 복지에 써야 되는 것을 특례를 줘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투자액수가 예를 들면 50억 이하나 이런 정도는 될는지 모르지만 50억 이상이 되는 건데 완전히 국회의 심사권을 벗어난다는 것은…… 그러면 과학기술 투자에 관해서는, 국유재산에 관해서는 국회가 심사 권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적절치 않다고 애기드립니다.

○박대출 위원 지금 지하 매설입니까, 지상입니까?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지상에 노출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좀 궁금한 것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26쪽에 보면 ‘존속기간 설정 필요’ 해서 아까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여가 있고 29쪽에 보면 양여가 없어요. 그것 분명히 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여가 포함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26쪽에 적은 것은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원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존속기한 설정 원칙이 사용료 감면의 경우에는 5년이고 양여와 장기사용 허가는 8년이라는 원칙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러면 여기는 양여는 포함이 없는 거네요, 이 조항에는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특례 적용범위 축소와 관련해서, 제2조의 4호 가·나 이 두 부분만 적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소위원장 유동수 과기부 동의는 했나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과기부도 동의했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오히려 이게 연구개발 기관들에서 불만이 없을까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특정 구역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기관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을 경우에 오히려 설치·운영 주관 기관의 권한을 제약할 소지가 있고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높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과기부도 이에 동의해서 범위를 축소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기재위에서 범위를 축소해 주면 자기네들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이 부분도 오후에 과기부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듣고 여기에 존속 기간 설정으로 조문을 고쳐 갖고……

○소위원장 유동수 예, 그러면 이 안건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유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다음 항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0쪽입니다.

국유재산특례법 중 라번입니다.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등의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율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등 가능하게 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10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법은 2024년 4월부터 시행되는 제정법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도심형항공기는 항공기 중에서 도심에서도 운행하기 적합한 기기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심항공교통은 사람·화물의 운송을 위해서 도심형항공기, 버티포트, 도심항공교통회랑 등의 이용·관리·운영 체계입니다. 이 중에서 버티포트는 보통 말하는 수직 이착륙장이라고도 하는데 도심형항공기 이륙·착륙·항행을 위해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을 말합니다. 이것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특례 신설 요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면,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익에 부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특례의 적용 대상은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또는 버티포트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특정되어 있고 적용 범위 역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범운용구역에 한정된다는 측면에서 명확성과 구체성은 충족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존속 기한이 개정안은 2029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존속 기한 설정 원칙에 따라서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앞서 오전에 했던 것과 유사하게 관련 법에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저희들 법에서도 반영하는 취지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존속 기한과 관련해서는, 지금 2029년으로 설정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 기준으로 사용료 감면은 5년을 존속기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28년까지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시간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이거는 그냥 그렇게 통과하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러면 일단은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는 걸로 수정의견에 잠정 동의하시고 다음번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6)

(14시31분)

○소위원장 유동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3쪽입니다.

개정안은 온라인복권 판매인 우선계약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의2의 지원대상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34쪽입니다.

개정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의2의 지원대상자를 추가하는데, 5조의2 지원대상자의 내용은 세 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오자입니다. ‘출산지원시설이용자’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손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포함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의2의 지원대상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그 지원에 있어서 5조 지원대상자와 5조의2 지원대상자 특례의 지원대상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과 한부모가

족지원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혁을 보면, 복권법 제정 당시에 우선계약대상자를 모·부자복지법 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모·부자가정의 세대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되면서 지원대상자도 확대해왔습니다. 이 확대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개정안은 우선계약대상자를 5조의2에 따른 지원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법을 보시면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와 지원대상자의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개정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인 모자가족, 부자가족을 모 또는 부가 세대주인 가족으로 정의하면서 세대주가 아닌 사실상의 부양자도 세대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의2는 한부모가족은 아니나 지원의 대상이 되는 특례를 규정하면서 세대주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대주를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현행 개정안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위원님들 질의·토론 시간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한부모가족이 지금 말씀처럼 모 중심이었는데 부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하시는 거지요? 지금 여기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로 모자가족, 부자가족 이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랑 또 다른 얘기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지금 한부모가정에 모자가족, 부자가족은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부분은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에 추가하는 것은, 출산지원시설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혼모 같은 경우 출산하기 전에 출산지원시설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 포함되고, 조손가족이 있습니다.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처럼 지금 특례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인정

해 주자는 거고요. 온라인복권 판매인 우선계약 대상자에 그 부분도 포함하자, 그리고 세 번째……

○서영교 위원 지금 류성걸 의원님 안은 거기다가 조손가정이라든지 아직 딱 되지는 않았지만 시설 안에 있는 모의 가정 이런 데도 포함하자, 이런 얘기가 추가된다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예.

○서영교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쭙보고 싶은 거는 이런 거거든요. 아이 출생신고를 미혼 모인 경우에는, 미혼인 경우에 혼외자일 경우에는 모만 가능해요. 출생신고가 모만 가능한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모 또는 부가 해야 돼서, 엄마가 애를 낳고 가 버리면 부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가 출생신고를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번 정도의 소송을 거치거나, 지금 조금 바뀐 게 유전자 검사를 했을 경우에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쭙보고 싶은 것은, 모 또는 부는 원래 있고 그 외에 조손가정도 낳자 그리고 또 엄마지만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엄마도 낳자 이런 거라서 되게 의미 있는 추가가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런 게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민법상은 할머니가 키웠으면 그 아이를, 예를 들면 지금 법안 같은 경우에 할머니가 키웠으면 그 아이가 혹시 사고를 당했을 때 할머니가 그 혜택 대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아직 그런 게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조손가정 그리고 말씀처럼 이런 건데 이런 증명이나…… 그리고 조손가정이 이런 신청을 하나요, 할머니가 애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너무 잘한 내용인데 과연 이런 게, 사실은 제가 이것 관련한 법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구하라 같은 경우예요. 얼마 전에, 할머니가 1살 된 아기를 키웠어요. 그런데 54년 키우다가 이 아이가 선원이 돼서 죽었어. 그런데 할머니랑 키워 준 고모는 하나도 상속을 못 받고 54년 동안 안 기른 엄마가 받거든. 이런 식으로 다른 데서 하나도 되지 않아 가지고 되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 나는 그게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손이나 이런 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런 예나 이런 신청이 좀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게 지금 인정이 안 됐으니까, 이런 신청을 많이 하니까 이런 법이 될 거 아니예요.

○김영선 위원 법은 법대로 하고 그 실행에서는 실행대로, 그거는 행정절차에서 해야 되는 문제니까……

○서영교 위원 그런데 이런 법을 만드실 때는 이런 신청들이 좀 많이 있었거나, 그런 신청 사례가 많이 있었는지 그런 걸 묻고 싶어요. 사실은 당연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는지, 그러니까 조손의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있어서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왔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신청 사례가 있는지, 앞으로 하면 그런 게 좀 많이 나올 수가 있는지, 실제로 민법에 전혀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게 여기서부터 조금씩 움직이는 게 좋은데 그런 게 있는지 묻고 싶다는 거예요.

○김영선 위원 그거는 우리가……

○서영교 위원 저기다 물었어요, 위원님.

○김영선 위원 국감 할 때 보면 될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먼저 한부모가족 지원법이라는 데서 지원 대상으로 조손가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 대상으로서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는, 소위 지원 대상이니까 이제 파악이 되는 거지요.

조손가정 같은 경우가 1307가구로, 22년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찌 됐든 숫자가, 대상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 복권법을 만들 때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취지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런 게 추가가 돼서 지원이 되고 있으니 우리 복권법에서도 그 사람들도 우선협상대상자로 넣겠다 하는 거고요.

실제 이 1300가구, 예를 들어서 조손가정만 한다면 1300가구 중에서 복권판매업을 얼마나 신청할지는 저희들이 사실 정확하게 파악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이 조그마한 자영업이라도 하겠다 신청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아직 많이 얘기가 온 건 아니나 다른 법의 근거가, 조손가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법에서 그 근거를 바꾸는

거다 이런 말씀이고 아직 실제로 그런 시책 내는 거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제도를 바꿔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서영교 위원 아직 없는 상태이긴 하나 이런 게 만약에 되면 어려운 조손가정이나 이런 경우에 신청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게 의미가 있겠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류성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성걸 위원 이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 대상을 더 늘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지원 대상을, 복권법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박대출 위원 쉬운 거는 쉽게 갑시다. 이거 뭐 따질 것도 아니고, 지원 대상 늘려 주는 데 이의 있을 것도 아니잖아.

○서영교 위원 아니, 위원이 묻지도 못합니까? 파악도 하고 체크해야지.

○박대출 위원 아니, 묻고 나서 하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 아니, 이게 다른 법을 연동시켜서 바꾸신 거군요. 저는 아주 많은 요구나 그런 상황이 있는가 해서 한 거고, 이게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민법에도 적용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오히려 거기는 빠르게 가는 것에 대해 의미를 갖고 얘기하는데……

○류성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59)

(14시42분)

○소위원장 유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42쪽입니다.

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가 제출한 것으로 행정상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43쪽입니다.

지금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내용들을 일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검사 거부·기피,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그리고 감독기관에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등 경미한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규정을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법규 상호 간의 균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은 검사·조사 및 보고 등의 거부 또는 거짓 이행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지만 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은 유사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등에서는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해서 징역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 조합들은 신용사업이 가능하고 조합원 및 자산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현행법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한 경우 그리고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균형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연초조합법 제정 이래 해당 위반행위가 없었고 인가 취소 등 별도의 행정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벌칙규정 완화에 따른 위반행위 증가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44쪽에 연연초생산협동조합을 설명하였고요. 그리고 45쪽에 관련 입법례로 유사하게 형벌이 있는 것과 과태료가 있는 것을 각각 예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 법은 취지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했습니다. 기재부와 법무부가 공동 TF 단장이고요. 관련된 경제 부처들이 다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과도한 형벌규정, 그러니까 경미한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형벌로 다스리는 그런 규정들이 소상공인이나 또는 기업이나 이런 데 너무 형사범으로 만드는 데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세 차례에 걸쳐서 TF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도 저희들이 부처 내에서 심의해 본 결과,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까지 형벌을 과하는 조항이 있어서 다른 조합이나 이런 데와의 형평성, 비례성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위원님들 질의·토론 시간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류성걸 위원 차관님, 저는 아주 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비슷한 협동조합의 경우에 다른 거하고 묶어 가지고 같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 말씀대로 다른 거는 지금 돼 있고, 보통 우리 법안 낼 때…… 존경하는 김영선 의원님도 그런 법안을 내셨는데 참 저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개 있을 때 묶어서 한목에, 문구 몇 개 고치는데 법안 한 개씩 낸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심사하는 데. 그렇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거 비슷한 거 묶어 가지고 전체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박대출 위원 일괄 정리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야. 총괄, 국무조정실이 있잖아.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협동조합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1차 TF 한 후에 법률이 나와 있는 게 17개입니다, 여러 분야에. 그래서 법제처하고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을 개별적이 아니고 모아서 하는 논의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게 아마……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또 묶어서 가면 소관 법률이 상임위가 다 다르다 보니까 결국 또 상임위별로 심의를 해야 되는 또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닌 것 같아요.

○류성걸 위원 그거는 여기 국회에 맡겨 놔 놓고요. 왜 그것까지 걱정합니까? 통합해도 되고……

○박대출 위원 그건 입법 형식의 문제고, 지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런 게 있다면 일괄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관련된 법안이 몇 개가 되는지 딱 일목요연하게, 이와 관련한 규제완화법이 몇 개 법이 되더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알려 줄 수 있고 이런 정부의 노력도 보일 수 있고 또 그 법안들이 한꺼번에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그런 교통정리의 효과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한 개씩 쪼개다 보면 어디에 갖다 붙이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류성걸 위원 그런 취지로 같이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쪼가리쪼가리 가져오지 마시고 간쫁하게 정리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다른 위원님들.

○서영교 위원 그런데 이 법은 원래 있던 이래로 한 번도 적발된 게 없다면서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저희 파악한 거로는 그렇습니다. 위반 사례가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위반 사례가 한 번도 없다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위반해서 형벌로 처벌된 경우는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아까 다른 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이런 데도 있고 말씀처럼 농협, 수산업, 산림조합 이쪽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다른 데는 있고 여기는 없고 그런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겠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서영교 위원 어쨌든 법 정리 차원에서 한다는 건가 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최소한 다른 조합법에서는 다 과태료로 하는 부분이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에서는 형벌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최소한 좀 균형을 맞추는 필요가 있겠다……

○서영교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탁이나 이런 데는 형벌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지금 형벌인 것은 농업

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입니다.
○서영교 위원 거기는 금융기관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나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예.

○서영교 위원 일괄로 다 묶기에는 또 상황과 처지가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우선 이것만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정부가 이렇게 TF를 꾸려서 형법에 의한, 형법에 의한 규제를 행정별 위주로 바꾼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권위주의적 행태의 행정에서 민주적 행정으로 발전해 나간다, 그리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 국민을 대하는 자세의 문제에서 굉장히 진일보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지적한 바와 같이 게을리한 경우와 거부·방해한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2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동일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보완할 생각이신가요?

이것 과태료 부분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와 그다음에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이건 의도가 있냐 없냐에 과태료의 부과에서 경중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것을 모두 다 같은 선상에서 2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이런 문제점, 경중을 어떻게 구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게 상한을 정한 거지 않습니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어차피 그 사안의 경중을 가릴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내부적으로 양형 기준 같은 것을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법률에서 뭐는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다, 어떤 건 200만 원이다 나누기는 또 너무……

○소위원장 유동수 아니, 다른 법에서는 또 구분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일괄해서 구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차제에 만드실 때 고의성이 있는 것과 고의성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구분해서 일괄해서 모든 법에서 만들어 주는 게 좋은데 여기는 그냥 뭉뚱그려져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사실은 법무부하

고 이런 기준들을 리뷰를 하고 법안을 낸 건데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법을 그렇게 좀 나누자는 말씀이신가요?

○소위원장 유동수 아니, 그러니까 양형을 정할 때 모든 법에서 그런 양형의 기준들을 똑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자체에 이렇게 TF를 통해서 형벌 규정을 행정별 위주로 바꾸었을 때 행정별의 기준을 정해서, 어느 법에서는 나누고 어떤 법에서는 안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마지막 점을 안 찍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알겠습니다. 그것은 TF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의결을……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것은 의결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그것까지 다 맞춰서 다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언제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TF에서, 어차피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따로 한번 해서……

○소위원장 유동수 그러면 법을 또 바꿔야 된다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양형 기준에서 그것을 좀 맞출 수 있도록이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일을 엄청 잘하시고 마지막에 마침표 안 찍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6)

(14시54분)

○소위원장 유동수 의사일정 제9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먼저 입법 배경을 말씀드리면, 동 제정안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 행정기본법이 2023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개 분야(이의신청, 인허가의제)에 대해서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재위 소관 법률 중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 규정이 해당됩니다. 모두 3개의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47쪽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48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 정비입니다.

지금 현행은 이의신청 기간을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5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고, 이의신청 시 10일 이내에 결과 통지하도록 돼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며, 신설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본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국민이 행정법 적용 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여기 표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개정안대로 되면, 음영이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의신청 기간이 지금 현행이 처분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였는데 앞으로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일반인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결과통지 기한은 10일 이내인데 행정기본법은 14일 이내기 때문에 훨씬 빨리 결과를 알수록 유리한 거라고 봐서 음영으로 돼 있는 개정안처럼 한다면 국민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릴까요?

○소위원장 유동수 아니요. 그냥 하나씩 하세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것은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가지고 물가안정법과의 관계를 국민이 조금 더 유리한 쪽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정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시간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의신청 시 10일 이내 결과통지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행정기본법에는 14일 이내에 하고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하시지 왜……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무슨 법에서는 10일 이내 무슨 법에서는 14일 이내 이런 게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차제에 이렇게 바꾸는데?

그거 그래 봤자 4일 차이인데 그것을 법마다 바꿔서 4일 먼저 주니까 국민에게 유리한 거니까 안 바꾼다 이것보다는 행정의 통일성을 기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다 쉽게 알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고, 처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기간이고. 그다음에 이의신청 결과 통지는 14일 이내에. 이렇게 국민들이 다 인식하게끔 하는 게 좋지 법마다 달리 규정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바꾸는데.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이제 모두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유동수 아니지요. 이거는 기본법 적용이 아닙니다. 물가안정법에서는 10일 이내고 행정법에는 14일 이내거든요. 그리고 행정법에는 14일 하고 10일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행정기본법을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통일을 하겠다라는 취지였다면 그 과정에서 그런 통일 작업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이 기본법과의 다른, 물가안정법 같은 경우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원칙이 현재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행정기본법이 개정돼 가지고

30일 이내다라고 하면……

○소위원장 유동수 14일 이내.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아, 14일 이내라고 하면 그러면 어찌 됐든 국민의 입장에서 10일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법이 개정됨으로써 더 늦어지는 측면, 이것은 오히려 통일의 어떤 편익과 그런 것에 따르는 문제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입법안이 나온 것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게 단기적, 단시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 내에서 국민들이 모두 다 같은 법으로 인식하게끔 교육받는 게 행정의 명확성 측면에서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 제정할 때마다 이 법은 며칠 이내, 이 법은 며칠 이내 다 외워야 하잖아요,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법도 그냥 행정기본법을 따르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이렇게 바꿀 것 같으면……

○박대출 위원 저도 동의인데 이게 두 법만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기준이 있으면 이의신청 기간을 딱 그냥 하나, 한 기준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조항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다 찾아가지고 전부 통일해서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영교 위원 저도 잠깐 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의신청 규정 정비.

52쪽, 앞엿것을 하니까 뒤에는 안 하지만 거기에는 또 행정기본법에 따르게 다 해 놔어요. 음영 표시해 놓은 것 보면 이의신청 기간은 처분받은 날짜로부터 30일 이내, 결과통지 기한은 14일 이내,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큰 차이 없다면, 그렇게 10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이게 있는 것도…… 제가 적용한 사례, 뭘 모르니까 그렇지만 어떻든 이렇게 하든지 두 가지를 냈고 두 가지가 다르게 적용되어 있는 아주 묘한 사례여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참고로 보조금 같은 경우는 20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분받은 날부터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게 20일인데 이것은 오히려 행정기본법에 따라 30일까지 늘려 주는 게 국민들한테 더 혜택을 부여하는 게……

○서영교 위원 이걸 이의신청 기간인 거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게 맞춘 거고요.

○서영교 위원 아까 얘기한 것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한을 얘기한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통지는 또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빨리해 주는 게 유리한 거고 그런 차원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10일로 했기 때문에, ‘빨리해 주는 게 유리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 여기에는 14일이라고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52쪽을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통지 기한 자체가, 보조금법 얘기입니다. 통지 기한 없었는데 없으니까 그것은 14일로 오히려 제한을 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취지로, 아마 계속되는 법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조문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통지 기한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서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이러면서 14일 이렇게 해 놔잖아요, 여기 글에. 그러니까 앞엿것을 신경을 써 가지고 10일의 범위에서라고 한번 넣은 것 같은데, 이건 김영선 의원님 안이고요.

○박대출 위원 이렇게 물어볼게요.

보조금법도 있다면서요, 행정 속도는 줄이고 국민 편익은 늘리고 이래 가지고 기준을 하나로 딱 만들면 안 되나? 지금 행정기본법이 14일 이내 된 것도 10일 하면 안 되나? 그다음에 물가안정법 30일 이내 이것도 30일로 하면 안 되나?

○소위원장 유동수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건 모든 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러니까 개별법을 다루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10일을 14일로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것은 맞추면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관련되는 법률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칙에 따라서 아마 정비를 하고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저희 것만 이렇게 하는 게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은 행정기본법 담당하는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려서 진행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세요.

○소위원장 유동수 협의해 보세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10일하고 14일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유 간사님 말씀 따라 확일적으로 하는 게 공무원들도 덜 실수하고 당사자들도 덜 실수해요.

○**박대출 위원** 맞추는 게 맞아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별문제가 없으니까 유동수 간사님 말씀대로 그냥 행정기본법에 따라 하는 게 맞겠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데, 보조금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기본 권한이 있는 건데 그냥 하면 되지 이걸 무슨 또 행정부랑 상의를 해요.

○**류성걸 위원** 법안을 제안하신 김영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안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행정처분에 있어서, 이 기본법을 만들 때의 취지는 국민들 편에 서서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한의 이익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14일보다도 더 빨리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인정을 해 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영선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야기드릴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10일이었던 것을 14일로 하면 통보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물론이 내용을 두 번 통보를 받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지난번에 10일까지 해주더니 법 바뀌 가지고 오히려 14일까지 왜 4일이나 늦게 통보하지?’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김영선 위원님이 14일로 하시자면 14일로 하지만 본래의 법 제안 취지는 10일로 하는 게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출 위원** 지금 개정이 아니라 현행 10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10일 돼 있는 거 오히려 14일로 늘리는 거예요.

○**김영선 위원** 내가 유동수 간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4일을 빨리하는 거하고 국민들이 대충 이의신청은 14일로 온다고 동일하게 인식하는 그 사이에서는 집행하는 사람이나 집행을 받는 사람이나, 4일이 양보가 되지만 오히려 확일적으로 되는 게 국민 편익이 더 있지 않나 거기에 저는 동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박대출 위원** 아니, 그건 좀 문제가 달라.

○**류성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15일로 돼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5일, 처분 있는 날로부터 30일로 하면 신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뒤로 많이 늘려 주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행정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을 때는 빨리 알아야 되는데 지금 14일 이내로 한다면, 그 전 같으면 10일까지 되면 통보를 다 받았을 건데 이 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해서 10일까지 와야 될 결과 통보가 14일까지 오게 되면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의신청 기간하고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한하고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럴 거 같으면 기본법에 맞춰서 전부 다 해 버리지.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 기한이 빠를수록 좋은 거는 빨리 되도록 내놓고 늦을수록 좋은 거는 행정기본법에 따라서 늦게 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을 만들 필요 없어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소위원장 유동수** 예, 말씀하세요.

○**서영교 위원** 우문인거 같기는 한데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의신청,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차관님 아세요, 어떤 게 있는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를 들어서 물가안정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독과점 관련 고시도 하게 됩니다. 고시에 따라 가지고 수급안정 조치나 이런 것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만 팔아라. 더 이상 팔지 마라’라는 어떤 조치가 나갈 수 있습니다, 처분이.

○**서영교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의신청인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런 케이스입니다.

○**서영교 위원** 좀 쉬운 말로 한 번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쉬운 예로?

○**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 장윤희** 물가구조팀장

장용희입니다.

말씀하신 것들이 독과점 방지를 위해서 지금 네 가지 정도의 처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소수 때처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는 게 있고요. 최고가격표시제가 있고……

○서영교 위원 요소수 때,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 장용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서 생산 조절을 했던 그런 명령들이 가능하고요.

○서영교 위원 요소수 때 ‘이거는 가지고 있어라. 팔지 마라’ 뭐 이랬던 거지요?

○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 장용희 예.

○서영교 위원 그 조치를 취하니까 ‘안 돼요’ 이라고 이의신청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 장용희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고, 사실 물가안정법이 긴급조치들을 좀 담고 있는데 그런 긴급조치들 담고 있는 유사 법이 석유사업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정부가 통지를 하는 걸 10일로 규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좀 중요한 긴급조치에 대해 이의신청했을 때 조속하게 권리관계를 확정해 줘야 되는 목적이 있어서 14일보다 10일로 한 법 사례들이 좀 많이 있어서 차관님 말씀대로 이건 행정기본법 관계를 저희가 좀 확인해 보고 수정하는 게 어떨까……

○서영교 위원 여기에 보면 10일의 범위에서 빨리 답해 주고 그게 괜찮으면 14일까지 한 번 연장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행정기본법에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래서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14일 내에 결과를 통지하되……

○서영교 위원 한 번은 10일 내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불가피하게 그 기간을 못 지키게 될 경우는 한 번에 한해서 10일 내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행정기본법 얘기입니다.

○서영교 위원 아, 14일 이내에 하고 10일 정도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는 거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 기간 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14일을 못 지킬 경우에.

○양기대 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예, 양기대 위원님.

○양기대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거 같고 또 류성걸 간사님 말씀도 맞는 건데 다만 원칙

은,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의신청 기간은 긴 게 좋을 거 같고 이의신청 결과통지 기한은 짧을수록 좋은 거 같아요.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소위원장 유동수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기 편하게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차관님이나 기재부 물가 담당…… 국장님이십니까?

○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 장용희 팀장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팀장님이 이렇게 답변하기를 바랍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이걸 10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에는 14일로 돼 있지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10일 이내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해 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던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법을 제정할 때 법을 제정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법을 개정하실 때 법을 처음에 만들 때의 히스토리를 안 보고 만드세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법이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에 14일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에 관한 거에서는 이의신청 결과통지 기간을 10일로 정한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10일 이내 통지를 해야만 했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저희들은 바로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도 안 하시고 이렇게 원론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4일 먼저 받는 게 유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4일 먼저 통지받는 거보다 행정에 통일을 기해서 모든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는 게 이익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아까 말한 대로 ‘행정처분이 있을 때 이의신청했을 때 받는 결과로 볼 때는 굉장히 시급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는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는 걸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됐을 확률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하실 때, 특히 법을 만드실 때는 법이 만들어진 이유들을 꼭 보시고 또 그 법이 만들어진 이유를 반드시 남기시고, 그거 꼭 남기셔 가지고…… 왜냐하면 부칙이나 이런 부분

은 공식적 언어만 담기거든요.

지금 우리들이 만드는 법도 소위의 여러 위원님들이 발언한 내용들이 남아 있는데 이게 부대의견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록을 못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토리들을 행정부에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셔야지 다음에 법을 개정할 때도 그걸 쓴다, 그걸 이해하고 법을 만든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사족 같은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 때 가정용 전기 체계를 만들 때 6단계였습니다. 제일 기본인 가정용 킬로와트 수를 처음에 만들 때 왜 이걸로 만들었는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 한 가정에 텔레비전 하나 그다음에 냉장고 하나, 세탁기 하나, 4인 가정이 그렇게 쓰는 걸 기준으로 한 달간 사용량을 기본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잘 기록을 안 해놓으면 다음에 전기요금 체계 바꿀 때 그런 기준을 안 가지고 또 만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행정부에서, 기재부에서 법을 만드실 때 스토리들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차관님,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법안을 묶어 가지고 하는 거 참 좋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기준이 결국은 국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김영선 위원님이 변경을 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원안이 맞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 법을 검토하실 때…… 수용, 수용, 수용 해 놔는데 사실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행정기본법에 기존에 있던 14일 이전으로 해서 국민 위주로 됐을 때는 그걸 그대로 인정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 뒤로 밀려 가지고 할 때는 인정하도록 돼 있고 인허가 의제라든지 그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법을 이렇게 하겠다면 행정기본법 필요 없어요. 다시 모든 법에다가 이렇게 다 넣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한 가지만 딱 여쭙볼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제가 행정기본법

의 조문을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류성걸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다음 설명해 주세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 정비.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52쪽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정기본법에 맞추어서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수정하고, 이의신청 조치사실 통지기한은 14일(연장 시 연장기간)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행정기본법과의 연결규정이 생깁니다. 동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36조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법의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보조금법과 행정기본법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영으로 돼 있는 것처럼 행정기본법 내용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53쪽입니다.

다만 행정기본법과의 연결규정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민원처리법은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과의 적용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 거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현행법 체계는 보조금법이 우선 적용되고 거기에 규정이 없으면 민원처리법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개정안 4항의 연결규정에 따라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행정기본법만 적용되고 민원처리법의 적용이 배제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와 달라지고 민원처리법과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54쪽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법이 민원에 있어서 특별법적 지위에 있어 행정기본법보다 우선하므로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개별법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민원처리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정안 제4항은 삭제가 필요하다, 향후 추가될 수 있는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체계 보완 시 통일성을 위해서 민원처리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도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만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개정안 4항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재부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 부분은 그런 취지로 법안이 왔는데 행정기본법과 민원처리법 간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행정안전부하고 법제처, 소관 부처와 담당 부처에서 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왔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쪽의 유권해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류성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성걸 위원 차관님,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이렇게 법안에 대해서 하는 것은 김영선 의원님이 이 법의 체계를 몰라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니까 개별법 우선, 민원처리법, 행정기본법 이 순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법에 의해서 우리는 행정기본법을 원용한다 하더라도 우리 법이 우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 법을 개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하면 비록 행정기본법에 관련되는 규정을 원용한다 하더라도 우리 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류성걸 위원 그러면 우리 법, 민원처리법 그다음에 행정기본법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제처인지 다른 외부기관에서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우리 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게 되면 법체계가 도돌이표 형태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을 개정하면 우리 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법 논리상으로는 우리 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 법을 논의할 실익이 전연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데 뭐냐 하면 저희 법을 만드는데 그 규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규정의 경우는 어찌 됐든 민원처리법과 행정기본법 부분에 있어서 행정기본법을 준용한다라는 안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소관 부처에서 전해 온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법을 소관하는 저희 부처, 기재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규정과 관련된 절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해석되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소관 부처에서 의견을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받는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류성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국민들 입장에서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대원칙과 그다음에 우리 법은 우리 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법에 이의신청 기간 하고 이의신청 결과통지 기한 관련된 사항이 없는 게 바람직하다면 이 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개정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안 한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지금 두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이의신청 기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행정기본법에서 국민들께 조금 더 편익을 준다는 측면에서 30일이라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기본법이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의 편익 입장에서 30일로 바꿔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절차에 있어서 무엇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으로 모든 것을 정할 수가 없다 보니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을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행정기본법의 절차를 준용해서 따른다 하는 게 기본

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민원처리법이라는 것, 이 보조금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법이 또 나오다 보니 그 부분의 우선순위는 지금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소관 부처의 의견을 넣어서 명확하게 해 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면 제가 근본적으로 한번 여쭙볼게요.

다른 법이 있는데 다른 법을 원용해서…… 법률 전문가들, 여기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 다른 법을 원용했다고 했을 때 그 원용한 법이 기본이예요, 원용해서 우리 소관으로 법을 하면 그 규정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김언성 기초실장 김언성입니다. 그 답을 하나 드리려고요.

○박대출 위원 답을 좀 정리해서 하세요. 쉬운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접근하나.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김언성 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김영선 의원님이 이 법 관련해서, 행정기본법을 준용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안 하셔도 됩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김언성 그래서 그 조항을 말씀드리면……

○류성걸 위원 이 법 전체가 다, 사실은 기본법을 만들 때의 취지는 이런 것을 없애기……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김언성 예,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조항을 제가 한번……

○류성걸 위원 잠깐만요.

기본법을 만들 때의 취지가, 제가 죽 읽어 보면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기본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기본법의 내용을 다시 개별법에다가 전부 다 적용하게 되면 모든 관련되는 사항을 법 개정을 다 해야 돼요.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김언성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면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

○소위원장 유동수 설명을……

○박대출 위원 들어 보고 하십시오, 들어 보고.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김언성 제가 설명을 약간만 드릴게요.

○소위원장 유동수 아니, 그게 아니고 발언 기회를 얻고 발언하세요, 그냥 얘기하지 말고.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김언성 예, 죄송합니

다.

○소위원장 유동수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김언성 행정기본법이 2021년에 제정됐습니다. 최근에 제정됐고요.

제36조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거기 보면 이의신청에 대해서 30일 이내, 14일 이내를 다 규정하고요.

제5항이 뭔가 하면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쉽게 말하면 보조금법에서는 이의신청에 30일·14일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고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앞에 물가는 규정에 15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고쳐 줘야 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앞에는 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바뀌 주는 게 맞고 이 법은 안 바뀌도 행정기본법에 있는 14일하고 30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소위원장 유동수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류성걸 위원님이 필요 없다고 그러지만 지금 벌써 갑론을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는데 개별법하고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과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정리 정돈을 하다 보니까, 이의신청 기간에 관해서는 30일로 하는 게 유리하니까 그것은 즉 행정기본법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통지 기간 연장은 동일한데 아까 한 것에도, 제가 내긴 했지만 또 유 간사님 말씀에 따라서 법의 명확성이라는 의미에서 양보할 수도 있다 생각을 했는데……

○소위원장 유동수 저 위원장으로 한 번만 불러주세요.

○김영선 위원 예, 위원장님.

○서영교 위원 류 간사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김영선 위원 아니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영교 위원 조심하세요.

○김영선 위원 예,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통지 기간 연장은 10일인데 결과통지 기간도 짧은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결정하면 돼요. 기본법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을 하느냐 14일을 하느냐, 우리가 민원처리법의 이의신청 10일을 할 수도 있고 행정기본법의 14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14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채택할 것이냐 아니면 14일 안 하고 10일로 할 것이냐 그것만 결정을 하면 돼요.

○서영교 위원 그래요.

○박대출 위원 그래, 쉬운 것 결정하자고요. 이것은 지금 개별법과 일반법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법에 하나로 맞출 것이냐 개별법에 별도 조항을 둘 것이냐 이 문제인데 뭐……

○김영선 위원 그래서 차관님 입장에서는, 나는 사실은 14일로 냈는데 유 간사님이 10일로 하자고 그러면 내가 그것은 양보할……

○양기대 위원 그러면 쟁점이 있으면 조금 한 템포 쉬었다 가.

위원장님, 한 템포 쉬었다가 가지요. 쟁점은 우리가 알았으니까.

○서영교 위원 14일이 딱 맞겠구면, 없던 것을 적용시키니까.

가셨으니까 14일로 해서 끝내요.

○소위원장 유동수 잠깐만요. 류 간사님이 가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법안대로 하시고 58쪽의 개정안 4항 이 부분만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지금 민원처리법하고 좀 상충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법제처 의견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러니까 이것만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의견으로 일치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김영선 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소위원장 유동수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위원장님, 잠시만요. 확인차……

그러면 57쪽, 58쪽은 수정의견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소위원장 유동수 예, 수정의견대로.

○박대출 위원 그런데 류 간사님도 동의하는지 그것만 확인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그러면 앞의 물가안정법

은 개정안대로 하시는 거고요?

○소위원장 유동수 예, 개정안대로.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감사합니다.

○박대출 위원 그것은 이제 류 간사님만 확인하면 돼요.

○서영교 위원 류 간사님 동의했어요. 지나갔어.

○소위원장 유동수 잠깐 없는 사이에 법안을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또 오셨네.

어쨌든 수정의견대로 전체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 규정 정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고 인허가 의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에 1항부터 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 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24조부터 26조까지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것으로 특별한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내용이라서 63쪽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인데요, 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일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것은 없는 규정에 대해서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앞것보다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대출 위원 명확하게 하는 거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시행일 부분도 1월 1일로 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예.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2675)

(15시40분)

○소위원장 유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1항 국가재정법 관련해서 과기부에서 설명하실 분이 오셨다고 그랬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전영수 국장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죄송하게도 직접 담당하는 국장은 오늘 해외에, 국외 출장 중이라서 제가 대신 오게 됐습니다. 담당 과장이랑 같이 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박대출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박대출 위원 저는 상관없어요, 다른 분들이 설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소위원장 유동수 상관없으십니까? 1항이 박대출 의원님의 법안이기에 때문에……

○박대출 위원 저는 설명 없이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에요.

○소위원장 유동수 괜찮다는……

○박대출 위원 예, 제가 요구한 것 아니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거니까요.

○김영선 위원 서영교 위원님이 요구하시지 않았나. 그렇지요? 질문하시려고……

○서영교 위원 내가?

○김영선 위원 누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서영교 위원 나는 안 했는데.

○류성길 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말씀하십시오.

○류성길 위원 국장님이라고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전영수 예.

○류성길 위원 관련되는 내용 설명부터 먼저 해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전영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 민간투자 형태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2020년 12월에 이미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도입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투자라는 게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같이 BTO라든지 BTL 방식 이런 것들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도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년간의 국비가 소요되는 임대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의결 절차가 국가재정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제도 기반 위에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로 같이 이렇게 뒷받침을 해 나간다면 민간의 창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율화하면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민간 쪽의, 산업계의 요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성길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재화와 서비스라는 그 두 가지로 보면 지금 사회 기반시설 민투법 관련해서는 재화와 관련된 사항이고 또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서비스 관련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까 분명히 드렸고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에 관련되는 사항들도 앞으로…… 물론 담당 국장님이 말씀하실,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차관님이 답변하실 사항인데 이것을 반영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서비스에 관련되는 사항들도 계속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지금 사회기반시설이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해서 법안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되면서 일부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전반적으로 SOC라고 하는 부분이 물리적인 것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별도로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길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소프트웨어 중에서 BTL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전영수 위원님, 그게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 수요조사 같은 것들을 꾸준히 해 왔고 몇 가지 제안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심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대출 위원 내가 그것 인용했어요, 다 설명했다고.

지금 공무원의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아이디어라면 그것은 민간에 갈 것도 없어요. 국가가 직접 하면 되지 뭐 그래. 뭐 할지 모르는 건데, 지금.

○소위원장 유동수 말씀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전영수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업으로 제시된 것은 스마트 어린이급식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식약처에서, 식약처랑 같이 코워크(co-work)해서 도입하고 싶다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영세한 어린이 보육시설에서 냉장고라든지 식자재 관리하는 것들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영양사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규모 어린이집 식자재 관리하는 것들을 시스템으로 모두 엮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면 영양사가 Io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신선도라든지 언제 입고가 되어 가지고 언제 한다든지 이런 것, 개별 어린이집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모은 다음에 시스템으로 묶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러니까 식자재가 상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관리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영양사를 고용할 수 없는 소규모지만 이런 공통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디지털기술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창의적인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저는 추가적인 질문 없겠습니다만 차관님께 여쭙게요.

아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여기 전부 다 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넣으면 법을 1개로 만들면서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서비스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서…… 통합법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저도 이 법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공공조달을 할 때 보면 이런 게 하나 특허를 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냈을 때 다음 공공조달 입찰에서 이것을 적용한 업체 이런 게 또 제한 규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하나 누가 개발해 가지고 계속, 사실은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런 공공조달 입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그런 게 있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로 이게 되지 않을까. 이게 시대가 지나서 다른 경쟁……

이 소프트웨어는 정말 수명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개발자들이 더 나은 것을 개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사장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전영수 일단 위원님, 소프트웨어가…… 일종의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메모리라든지 프로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드웨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업그레이드가 힘들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못 쓰게 되는 시기가 빨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서버 같은 데 저장되어 있는 상태라서 서버를 바꿔 주면 소프트웨어 코드 자체는 영원하게 보관이 되는 거고……

○김주영 위원 아니, 그런 것을 계속 적용하도록 정부에서 돈을 대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런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업체들에게는 점수를 더 준다는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전자상거래 하는데도 규제가 너무 많아서 그 프로그램을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것 지나갔는데.

그래서 그런 규제를 계속 해체해 달라고 요구

를 해서 지금은 일부 해제가 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전영수
공공조달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기존에 공공조달이 입찰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한다거나……

○김주영 위원 실적 말고요,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이것은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한 업체 이런 부분들에 제한 규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공입찰을 죽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전영수
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과장이 같이 왔는데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유동수 예, 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장 장두원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장두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투사업을 진행할 때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보통은 이런 시스템, 이것도 일종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이 돼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보통 짧게는 5년에서 7년 정도 활용이 되고요. 길게는 장기간으로 10년까지도 그 시스템이 계속 활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예를 들어서 민투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7년을 해서 3년을 구축하고 4년 동안 운영·유지·관리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2단계를 차세대 사업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고도화해야겠다 이러면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이미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면 다른 사업자들도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환경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영 위원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장 장두원
예, 이번에 과방위에서 통과된 민투 관련 동일한, 같이 패키지로 들어간 법안에는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김주영 위원 그게 법령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장 장두원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전영수

위원장님,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도 그게 다 적용이 되느냐 말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장 장두원
일반적인 용역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 말고요. 일반적인 용역계약에서도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프트웨어는 지금 처음 이런 법률 제정을 하지만 다른 특허라든지 이런 것을 낸 제품들에 대해서 이미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것을 사례를 사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불필요하게 그런 것을 계속 사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여기도 이것보다도 자기가 더 나은 것, 이런 것을 개발해서 가져갔을 때 이게 안 들어가면 인정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피복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고어텍스가 좋은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고어텍스와 거의 같은 품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배제되는 이런 모습들도 봐 왔었고요. 다른 특허 제품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봐 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

다.
정부에서 개발해서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계속 쓰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업그레이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사람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는데 여전히 이것을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장 장두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민간의 제안을 받고 공공기관에서 이것이 민투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과기정통부에 이것을 제출하게 되면 과기정통부는 적격성조사를 하게 되고요. 약 6개월 이상의 적격성조사를 해서 이것이 민투사업으로 적격하다, 그리고 또 일종의 컨설팅 지원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김주영 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공공조달 할 때 그런 조항들을 넣어서 이것보다 나은 제품들이 쓰여지지 않고 정부에 그런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돈을 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법만 제정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공공조달 할 때 그런 사업을, 지금 이야기했던 식약처에서 하는 품목들 관리하고 할 때 이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게끔 이렇게 될 거라고요, 안 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장 장두원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격성조사가 끝나면 사업을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제안을 했던 제안사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지요.

○김주영 위원 아니, 다 주지요. 다 주는데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된다는 전제가 붙는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전영수 위원님, 민간 쪽에서 제안하는 사업,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구매해서 쓰는 사업 종류밖에 없었는데 지금 민간투자 형태로 해 가지고 민간 쪽에서 제안해 주고 그것을 정부가 검토해 가지고 임차 형식으로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선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박대출 위원 잠깐만요, 내가 중간에 안 낄 수가 있는데 서로 지금 계속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결국은 조달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이게 된다고 해서……

○김주영 위원 그러니까 입찰 조건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더 나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더라도……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런 것을 저해하지 않도록……

○김주영 위원 이것을 계속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것은 사실 운영 팔러시(policy)의 문제일 겁니다.

○박대출 위원 운영 팔러시의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

이것은 특수화된 기술이니까 특수화된 기술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만 올 수 있는 제한적인 입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공정한 룰이 적용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야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서로, 지금 진

도가 나가지를 않아요.

○김주영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제한되지는 않도록 될 겁니다, 이 특성 때문에. 그런데……

○김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런 부분은 또 조달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류성길 위원 법안 의결합시다.

○김주영 위원 꼭 챙겨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소위원장 유동수 양기대 위원님 질문.

○양기대 위원 제가 오전에도 질문을 했는데 김주영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면서……

이제 선택이 됐다 이거예요. 선택이 됐는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오히려 국가 예산만 굉장히 낭비하고 이게 그냥 흐지부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질질 끌려다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중간 점검이라든지 운영 상태를 굉장히 잘 체크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던져만 놓고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에 대해서? 그것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장 장두원 민투자사업, 어쨌든 저희 과기정통부하고 면밀하게 매년 운영 현황을 서로 분석하고 이렇게 검토……

이게 워낙 시행 초기다 보니까, 제도가 시행된 지가 너무 초기인데요. 저희가 운영 성과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과기정통부가 주무 부처로서 성과를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에도 보고드리고 이런 것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 잘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장 장두원 예.

○김주영 위원 하여간 입찰제한 조건으로 이런 부분들이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장 장두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정책관님,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관리시스템 개발비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로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전영수
지금 대체로 한 200억에서 400억 사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렇지요. 1000억 넘어가지는 않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전영수
더 큰 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안되는 내용은……

○소위원장 유동수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657조인데 200억, 300억을 BTL로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민간에서 이런 요구가 많았다, 그리고 이런 것에 우리가 부응해 줘야 되겠다 그런 측면으로 있는 건지 갑자기 BTL을 소프트웨어까지 확장하는……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적인 SOC 이런 부분에 BTL을 쭉 쓰다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BTL 방식이 개발될 확률이 큼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물꼬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이런 물꼬를 터야 할 사회적 수요가 많은가, 그런 요구가 많은가, 그런 사업이 있다면 뭔가, 그걸 여쭙본 겁니다.

그런데 정책관님이 담당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겨우 그 정도 사업을 가지고 BTL를 하자고 하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대출 의원님이 굉장히 잘 만드신 법인데 과기정통부에서 설명을 너무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소프트웨어 개발이 굉장히 뒤져 있잖아요. AI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뒤져 있는 나라인데, 그렇다면 ‘그런 쪽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금 붓물 터지듯이 현장에서 이러이런 사업들 계속 제안이 오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단기에 예산으로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서 BTL 사업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길 바랐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들으려고 오늘 모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답변하는 게 그 정도일 것 같으면……

국세청 전산망도 엔티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구입했고 매년 사업자 선정해서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행정에 관한 정말 드라마틱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구입 방식이 아니라 BTL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전영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취지 그대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조사된 것은 식약처에서 낸 시스템이라서 조금 소규모인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아마 이렇게 SaaS 형태로 서비스가 진화되고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초거대 AI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행정서비스도 굉장히 고도화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굉장히 큰 규모로 투자가 필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대출 위원 제가 법안을 낸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는 미래의 시장을 열자라는 취지고, 그것을 어떻게 여느냐? 다양한 민간 형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관 협력 시스템으로 또 하나의 창구를, 길을 내서 시장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른다면 이런 거겠지요. 영화 시장을 개방할 때 무슨 영화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개방해 놓고 나면 다양한 영화들이 만들어지면서 1000만 시장들이 계속 형성되면서 나온 것이지요. 지금 시점에서 ‘영화 열어 놓고 나면 무슨 영화가 나오지?’ ‘I don’t know, you don’t know, we don’t know’지요.

그러나 이 시장을 열어 놓고 이 길을 열어 놓으면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는 생각지도 못할 그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미래를 견인할 산업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기술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지금 만드는 거고 그게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제도적인 길을 만들자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아마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린이집 급식관리 시스템 이것 말고 또 더 없어?’,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그걸 이제 짜내기 시작해야 되는 거고 만드는 거지요. 그런 걸 설명을 하셔야지요. 자꾸 지금 현재 시각에서, 이것밖에 못 하는 걸 가지고 BTL로 왜 넣느냐 그렇게 질문이 나오면 답이 안 되잖아요.

○소위원장 유동수 이수진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이수진 위원 지금 소프트웨어법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전형적인 BTL 방식이 아니지요, 공동 소유는? 맞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장 장두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진 위원 왜 공동 소유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장 장두원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힘들게 개발자들이 소스코드…… 이게 결국은 소스코드 형태의 결과물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고 공공에서 한 걸 가지고도 민간에서 새로운 시장도 만들고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 가는 것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 실제로도 용역계약도, 일반적으로는 지식재산권이 일반적인 하드웨어하고는 다른 거니까 이것은 용역계약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보시면……

○이수진 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도 소유권을 가지고 그 소유권을 기반으로 좀 더 다른 활동을 더 해라 이런 취지라는 말씀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장 장두원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이수진 위원 어떤 사업? 그러니까 국가와의 계약 말고도 그걸 기반으로 다른 사업을 더 하라는, 촉진시킨다는 의미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장 장두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수진 위원 그러면 그 임대료를 적게 받아야 되겠네, 민간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장 장두원

지금 일반적인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으로 지금……

○이수진 위원 그러니까 추계되는 임대료나 이런 게 더 적을 것 아니에요, 공동 소유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장 장두원 저희가 일단은 적격성조사를 하면서 정부가 추진했을 경우의, 정부가 기획을 하고 정부 주도로 추진했을 때의 비용을 산정하고요. 저희가 적격성을, 민투를 인정할 때 그런 하나의 파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추진했을 때보다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유동수 이 안건은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124304)

(16시00분)

○소위원장 유동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가회계법에 관해서 기재부에서 설명하실 분이 나와 계신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김언성 기획조정실장 김언성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금흐름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현행 디브레인을 개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현금흐름표가 나오는데 디브레인 개편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편 작업이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편을 내년 풀로 하고 25년부터 작업을 시작하니까 25회계연도부터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2025 회계연도 결산부터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다른 말씀 하실 게 없으십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개정안대로 하는 게 가장 빠른 시간이다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회의를 열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 영 선	김 주 영	류 성 결	박 대 출
서 영 교	송 언 석	양 기 대	유 동 수
이 수 진			

○출장 위원(1인)

홍 성 국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송	주	아
-------------	---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 1 차 관	김 병 환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언 성
미 래 전 략 국 장	김 재 훈
국 고 국 장	임 형 철
재 정 관 리 국 장	김 현 곤
공 공 정 책 국 장	강 영 규
대 외 경 제 국 장	민 경 설
정 책 기 획 관	장 문 선
경 제 예 산 심 의 관	황 순 관
국 유 재 산 심 의 관	윤 석 호
재 정 건 전 성 심 의 관	최 한 경
공 공 혁 신 심 의 관	장 정 진
국 고 보 조 금 부 정 수 급 관 리 단 장	이 주 현
조 정 조 달 국 장	문 경 례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전 영 수
정 보 통 신 산 업 정 책 관	